

동대문구

2022년

동대문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2023. 2.



동대문구
[옴부즈만]

목 차

I. 옴부즈만 개요	1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2. 동대문구 옴부즈만 소개	
3.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II. 운영현황	4
1. 옴부즈만 민원신청	
2. 업무처리 절차	
3. 운영방법	
III. 운영실적	7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 고충민원 처리내역	
IV. 주요사례	11
V. 홍보현황	37

I **옴부즈만 개요**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 도입배경

『동대문구 옴부즈만』을 운영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함

○ 운영근거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과

- 2016.11.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2017.0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7.08.01.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이용복·윤대영 옴부즈만 선정
- 2017.09.07. 옴부즈만 최종 합격자 공고
- 2017.09.20. 동대문구 옴부즈만 운영 시작
- 2017.12월 동대문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페이지 신설
- 2018.02.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 2018.02.28. 홈페이지 내 게시판 신설하여 인터넷 접수 시행
- 2018.03.02. 동대문구 옴부즈만 신조 공인 등록
- 2018.04.03.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김영천 옴부즈만 선정
- 2018.09.03. 김영천 옴부즈만 위촉
- 2019.05.22.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소재선 옴부즈만 선정
- 2019.07.02. 소재선 옴부즈만 위촉
- 2020.09.03. 김영천 옴부즈만 재위촉
- 2021.07.02. 소재선 옴부즈만 재위촉
- 2022.01.06.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가등급)(옴부즈만 부분 평가점수 만점)
- 2022.11.01. 천정희 옴부즈만 위촉

동대문구 옴부즈만 소개

○ 구성인원



소재선 옴부즈만

- 위촉기간 : 2021. 7. 2. ~ 2023. 7. 1.
※ 2023년 상반기 후임 옴부즈만 모집·위촉
- 근무일 : 목요일(매주) 14:00~18:00
- 주요경력
 - 법학박사
 - 前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



천정희 옴부즈만

- 위촉기간 : 2022. 11. 1. ~ 2026. 10. 30.
- 근무일 : 화요일(매주) 14:00~18:00
- 주요경력
 - 前 동대문구 안전생활국장

○ 목 적 :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터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2>

○ 자격요건 : 조례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동대문구 ombudsman 구성

- 구성인원 : 2명
- 소 속 : 동대문구(직무수행과 관련 독립성 보장)
- 임 기 : 4년(연임 불가)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촉방법 : 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운영형태 : 독임제(필요시 협의)
 - 다른 기관의 ombudsman의 운영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구는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음
 - 독임제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결정의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합의제로 결론을 도출하는 등 민원의 성격에 따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
- 직무권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ombudsman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1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ombudsman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4.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5.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6.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mbudsman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4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① ombudsman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구청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구청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II 운영현황

옴부즈만 민원신청

○ 고충민원의 개념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고충민원 제외대상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구의회에 관한 사항
7.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8.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직무관할 : 동대문구(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 청구요건 : 구민 누구나

○ 작성방법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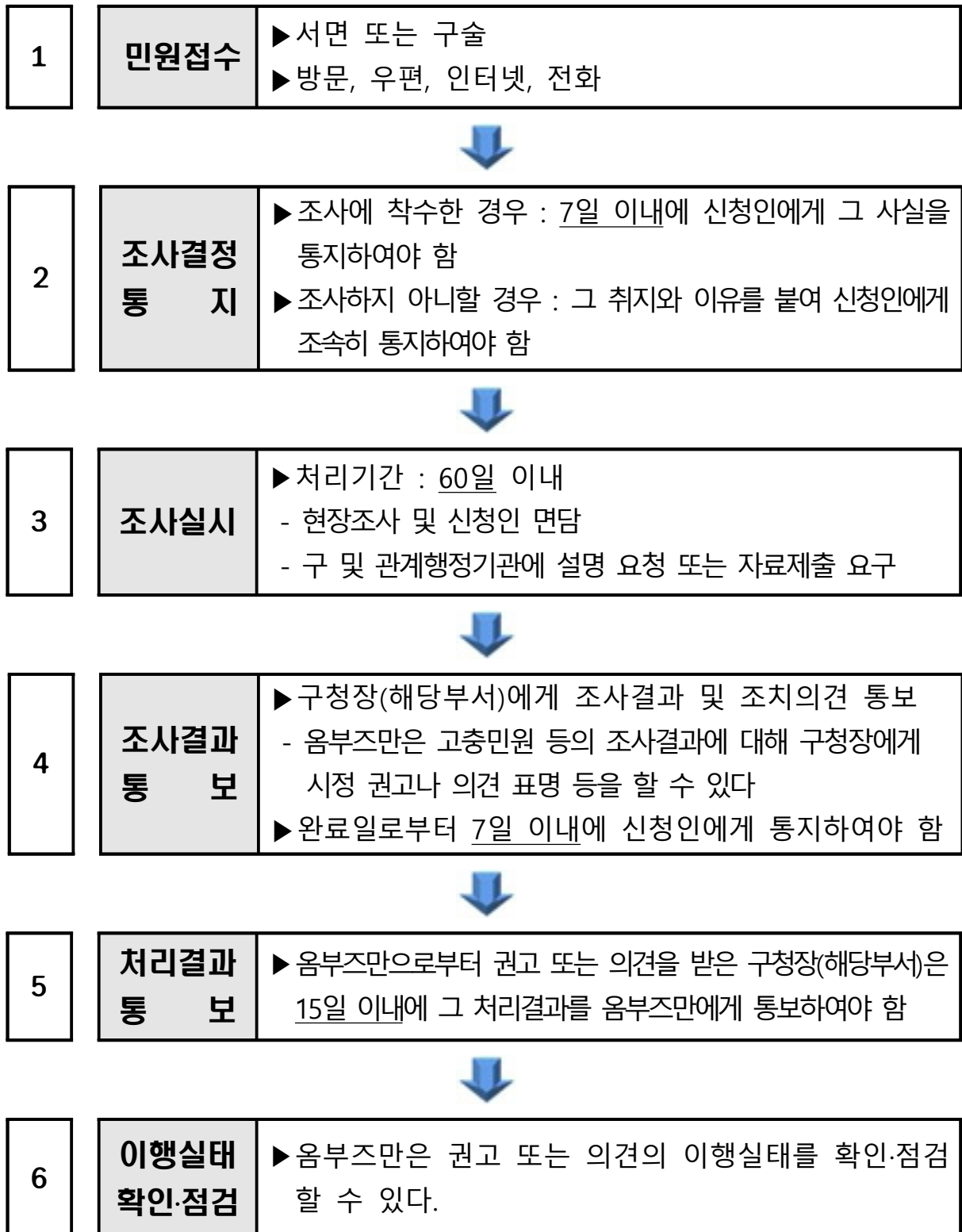
- 방 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동대문구청 8층 옴부즈만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동대문구청 8층 감사담당관
- 인 터 넷 : 동대문구 홈페이지 - [희망동대문] - [동대문구 옴부즈만] - [옴부즈만 민원신청]
- 전 화 문 의 :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02-2127-4011)

[illegible]

○ 운영장소 : 구청 8층 옴부즈만 사무실



업무처리 절차



III

운영실적(2022년)

행복을 주는 동대문구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접수현황

연도	구분	민원구분		처리유형		합계
		일반민원	반복민원	직접조사	민원검토	
2022년도		12	28	35	5	40

※ 반복민원이란 읍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과 읍부즈만 스스로 인정한 사안에 해당한다.

※ 민원검토 : 읍부즈만이 검토 후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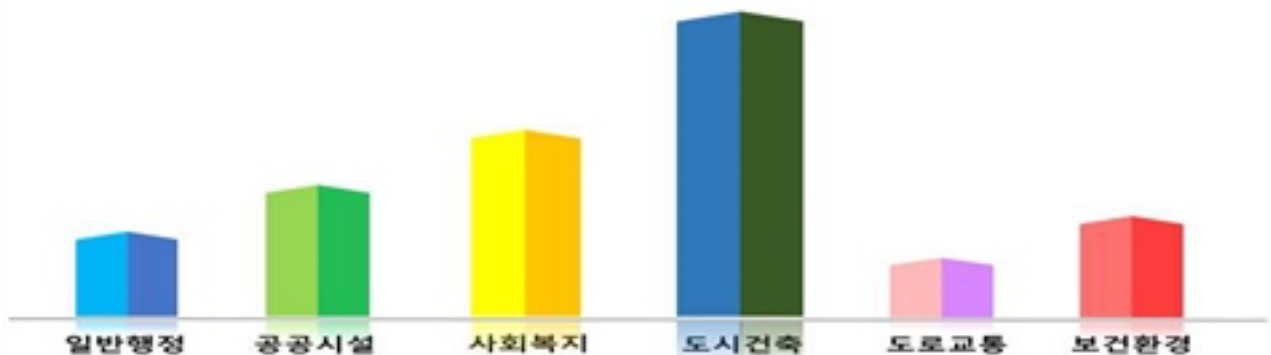
<민원 구분 현황>



<민원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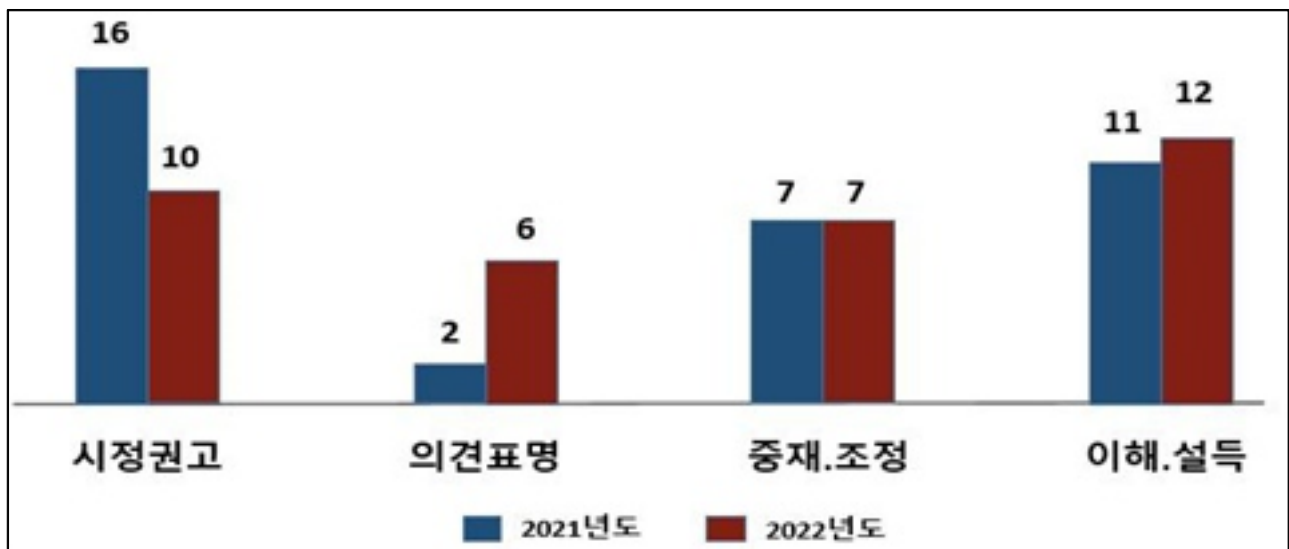
○ 분야별 민원현황

연도	구분	일반행정	재무행정	공공시설	사회·복지	도시·건축	도로·교통	보건·환경	문화체육	합계
2022년도		3	-	6	9	16	2	4	-	40



○ 직접조사 처리현황

연도 \ 구분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중재·조정	이해·설득	총계
2021년도	16	2	-	7	11	36
2022년도	10	6	-	7	12	35



✚ 고충민원 처리내역

○ 민원검토

연번	민원내용	주관부서	처리결과
1	밥퍼 철거 및 이전 요청	주택과 어르신장애인과	이해설득
2	경동시장 상점 무단 증축 및 무신고 불법영업 행위 신고	주택과 경제진흥과	이해설득
3	이문○구역 조합장 비리 수사 요청	주거정비과	중재조정
4	이문○구역 재개발 관련 대의원회의 속기록 공개 요청	주거정비과	의견표명
5	○○동 물류터미널 반대	도시계획과	이해설득

○ 직접조사

연번	민원내용	주관부서	처리결과
1	청량리역 임시선별검사소 불친절한 민원응대	가정복지과	시정 권고
2	청량리 ○○○○○○○○공사 관련 안전사고 예방점검 요청	주거정비과	의견표명
3	용두동 성북천 공영주차장 불법주차 따른 운영 중단 요청	주차행정과	이해설득
4	정화조 청소업체 서비스 개선 및 결제수단 개선 요청	청소행정과	시정 권고
5	청량리역 4번출구 복권판매소 철거 요청	건설관리과	이해설득
6	주민등록번호 부여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요청	민원여권과	이해설득
7	황물로 일대 왕벚나무나 느티나무로 수종 변경 요청	공원녹지과	의견표명
8	○○○동○○○번지 물건지의 무단증축 단속 요청	주택과	시정 권고
9	2급 자동차 공업사 허가요청	자동차관리과	이해·설득
10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완료 전까지 사용승인 보류 요청	건축과	중재조정
11	답십리 제○○구역 주민간담회 전 자료비공개에 대한 조치 요청	주거정비과	중재조정
12	청량리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임총회에 관한 조치 요청	주거정비과	이해설득
13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련 조치 요청	스마트도시과	의견표명
14	경동시장 아케이드 공사 시 불법노점(건축물) 철거 요청	경제진흥과	시정 권고
15	밥퍼 노숙인 조치 요청	사회복지과	시정 권고
16	격리해제 후 사망하신 어머니의 억울함과 장례지원비 해결 촉구	지역보건과	이해설득
17	배봉산 둘레길 일방통행 해제 요청	공원녹지과	의견표명
18	동대문구 내 길고양이 거울집 사업 폐지 요청	경제진흥과	중재조정
19	인근 건물 공사 후 발생한 해충 방역 조치 요청	지역보건과	시정 권고
20	○○동소재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요청	건설관리과	시정 권고

연번	민원내용	주관부서	처리결과
21	○○동 ○○외 1필지 건축허가 득한 경위 공개 요청	건축과	이해설득
22	아파트 단지 내 담배로 인한 화재 위험 예방 조치요청	주택과	시정 권고
23	지방보조금 부정지급 관련 조사 요청	경제진흥과	이해설득
24	○○동 ○○번지 담장 노후화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	건축과	시정 권고
25	동대표 출석수당 지급의결 관련 민원	주택과	의견표명
26	○○동 ○○○ 바닥 마감처리 미흡에 따른 불편 해소 요청	건축과	중재조정
27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요청	교육지원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시정 권고
28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관련 민원	부동산정보과	이해설득
29	동대문 청소년독서실 폐관 반대 요청	아동청소년과	의견표명
30	○○○○○○○○케어센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및 면회 불편사항 개선 요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이해설득
31	동대문구 가로수 정비사업 요청	공원녹지과	이해설득
32	○○○○동 ○○○ 옥상 풋살경기장 소음 민원	체육진흥과	중재조정
33	○○○동 ○○○○○ 도면 열람 요청	주거정비과	중재조정
34	도로 원상복구 요청	도로과	중재조정
35	○○○○○○○ 청량리 ○○○○ 기부채납시설 재검토 요청	건축과, 아동청소년과 지역보건과	이해설득

IV 주요사례

행복을여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임시선별검사소 불친절한 민원응대

민원개요

- 민원접수 : 「옴부즈만」 및 「서울전자민원상담」
- 민원요지
 - 청량리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과정 중 직원 불친절 응대에 대한 교육이나 방침마련 요구

조치의견 : 시정권고

-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 관련 의료진에게는 검사 시 주의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 및 응대 태도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종사자에게도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요청
- 아울러 검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더 친절한 태도와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조치결과

▶ 가정복지과

-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모두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청량리 ○○○○○공사 관련 안전사고 예방점검 요청

민원개요

- 민원접수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원요지
 - 아파트에 입주 예정자인 민원인은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하여 공사장 안전관리를 우려하여 안전점검을 요청

조치의견 : 의견표명

- 이 사항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공사장에 대하여 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서울시 건축안전 자문단에 의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에 대한 수행실태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금번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축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공사관계자(시공사, 관리자) 회의를 추가 개최하는 등 겨울철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음
-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 의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에 대한 수행실태 점검 실시 요청

조치결과

▶ 주거정비과

-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동절기, 해빙기 등을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외부전문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 의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음



임시소방시설 추가설치 필요



임시소방시설 추가설치 완료

정화조 청소업체 서비스 개선 및 결제수단 개선 요청

민원개요

- 민원접수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원요지 : 정화조 업체의 개선사항 제안
 - 예약했던 날짜나 시간의 변경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미리 안내/연락
 - 모든 결제는 현금이 아닌 카드결제로 개선
 - 고객과 함께 청소 전·후 계량기 수치 확인

조치의견 : 시정권고

- 현재는 청소대금 현금수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청소업체에 카드 결제 도입을 적극 검토토록 하고 청소업체가 더욱 투명하고 청렴하게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권고 요청
- 청소 예약날짜나 시간변경 사전안내 및 연락이 없었던 사례와 추가 사례비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청소업체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요청
- 특히 추가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 발생 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치결과

▶ 청소행정과

- 예약 날짜나 시간변경 시 고객에게 미리 연락하도록 교육
- 현금 및 추가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철저히 금지
- 청소 전·후의 계량기 수치는 업체 차량 뒤 게이지로 눈금 확인이 가능
- 관련 정화조 청소 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체에 개선 요구에 대한 재교육 지시 (친절교육을 매 분기 하고 있어 교육 시 한번 더 본민원에 대한 교육 철저)

청량리역 4번출구 복권판매소 철거 요청

민원개요

- 민원접수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원요지
 - 청량리역 4번출구 복권 판매로 인해 복권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길을 막고 줄을 서서 노약자·장애인 등 보행이 어려움
 - 청량리역 주변 노점은 철거가 됐으나, 복권 판매대는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구청의 특혜로 생각됨

조치의견 : 이해설득

- 복권 판매대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로 구청의 점용허가 및 대부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물임. 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는 운영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 다만, 통행불편 민원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공사종료 후 도시미관,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로 재배치 권고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재산과 관련하여 조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금융재산을 3년마다 조회하고 있고, 재산 합계 4억5천만 원 미만인 운영자에 한해서 허가 갱신을 하고 있으므로 구청의 특혜가 아니라고 사료됨.

조치결과

- ▶ 건설관리과(현 도시경관과)
 - 청량리4번출구에서 ○○○길 ○-○ 앞으로 이전



청량리역 4번출구 앞



○○○길 ○-○ 앞

○ 관련법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제3조(점용허가) ①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 ②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내준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3년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4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 다만, 자산가액 4억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개정 2018.1.4, 2021.9.30>
- ④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11>
 - 1. 임대보증금
 - 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고 1억원까지만 차감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3.5.16>
 - 1.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 3. 임대차 계약서
- 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은 운영자는 갱신 전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갈음하되, 화해조서 기간은 갱신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0.1.9, 2021.5.20>
 - 1. 운영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인도하고 도로 점용면적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조(시설물 이전) ① 시장은 시설물의 자치구간 균형분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민의 보행환경 또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 1. 과밀시설물
 - 가. 가로판매대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해당 가로판매대
 - 나. 구두수선대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해당 구두수선대
 - 2. 위치부적정 시설물
 - 가. 보도폭이 4미터 이하인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
 - 나. 지하철역 또는 지하도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 다.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주변에 위치하여 버스·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입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
 - 라.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운전자의 교통흐름 파악을 현저히 방해하는 시설물
 - 마.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
- ③ 시장은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이 위치이전 등으로 그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1>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완료 전까지 사용승인 보류 요청

민원요지

- 옆 건물 신축공사 마무리 과정으로 사용승인을 준비중에 있음.
- 공사장 옆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제작 및 보관을 위해 사용 중인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물에 금이 가고 지하층에 누수가 시작됨. 의류제작 및 보관을 할 수 없는 상황임. 피해 완료 전까지 준공 승인 보류 요청

조사내용 : 중재조정

- 건축허가 개요
 - 대지위치 : 동대문구 ○○○ ○○○-○○
 - 건축주 : ○○○ 외 ○인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모 및 용도 : 지상4층, 연면적 409.22㎡/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건축허가일/착공일 : 202▲.▲▲.▲▲. / 202▲.▲▲.▲▲.
 - 사용승인일 : 202▲.▲▲.▲▲.
- 관련법률

「건축법」 제11조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치의견 : 중재조정

-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피해는 민사분쟁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누수피해는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
- 해당 신축공사 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신축공사 진행한 것임

- 해당부서에 건축관계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사)에게 민원사항 통보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조 요청한 상태임
- 본 건은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건축주가 적법하게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은 공사로 인한 누수를 이유로 건축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됨

조치결과

▶ 건축과

-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법하다는 건축사의 현장조사보고서 및 제출도서에 따라 허가처리 되었음
-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는 이해당사자간 해결해야할 민사적인 사항으로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신축된 경우 민원발생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답십리 제○○구역 주민간담회 개최 전 자료 비공개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개요

- 민원접수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원요지
 - 답십리 제○○구역 관련 주민간담회 전에 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간담회가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 요구

조사내용

- 민원내용 및 검토내용

①	민원내용	답십리 제○○구역 인터넷(네이버) 카페를 통해 열람가능했던 2020년 이전 주민대표 회의 회의록과 서면결의서가 삭제되어 열람 불가
	검토내용	주민대표회의 회의록과 서면결의는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9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에 의거 주민대표회의에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나, 주민대표회의 행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제108회 주민대표회의(2021.03.22. 개회)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인터넷(네이버)카페에 업로드하였고 이전 기록은 업로드하거나 삭제 한 적이 없음
②	민원내용	계약서 세부사항, 조합운영비 내역서 공개요청에 대해 공개하지 않음
	검토내용	계약서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인터넷(카페)에 공개 중이나 세부 내역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민대표회의로 정보공개 요청시 열람 또는 복사 가능함
③	민원내용	토지등소유자 81명이 요청한 의견서(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거인 추천인 수 등)에 대해 주민간담회 시 논의되지 않는 등 주민의견 무시
	검토내용	주민간담회 시 토지등소유자 81명이 요청한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토지등소유자간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주민대표회의와 반대의견을 가진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 무시당했다는 불만이 생긴 것으로 사료됨

조치의견 : 중재조정

- 답십리 제○○구역 주택재개발사업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함에 있어 간담회 개최 전 적절한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간담회를 진행함에 있어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민 간담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임
- 주민간담회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의견을 조회한 바, 주민간담회는 제25회 주민소식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세부설명 및 그 외 답십리 제○○구역 발전을 위한 제한 없는 질의응답을 갖는 회의로 사료됨
- 구역의 현안을 토지등소유자들과 공유하여 빠른 사업추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우리 구에서는 주민대표회의에 선거관리규정, 운영규정, 시행규정 변경안을 상정할 시 변경안을 토지등소유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답십리 제○○구역 인터넷카페에 공개되어 있음
- 아울러,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향후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주민대표회의에 협조 요청할 것을 소관부서에 권고

조치결과

▶ 주거정비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주민대표회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금번 간담회 개최 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토지등 소유자간 발언기회 분배, 간담회 진행방식 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불만이 많았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차후 간담회 개최 시에는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음

배봉산 둘레길 일방통행 해제 요청

민원개요

- 민원접수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원요지
 - 일방통행으로 어린이, 어르신, 병약자들이 조금 걷다가 돌아가고 싶어도 일방통행이라는 문구 때문에 멀리 우회해서 가야함
 - 코로나 19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음에도 야외인 둘레길 데크로드는 아직도 일방통행이 해제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구간만 이용하기가 불편함.

조치의견 : 의견표명

-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들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많은 구민이 이용하게 되는 배봉산 둘레길(데크로드)을 일방통행으로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의 편한 통행을 위해 일방통행 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되었으나,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으로 계속 적용 되고 있으며, 일방통행 해제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일방통행 해제 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소관부처에 요청

조치결과

▶ 공원녹지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방통행 해제



배봉산 둘레길

인근 건물 공사 후 발생한 해충 방역 조치 요청

민원개요

- 민원접수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원요지
 - 건물 공사 진행을 하고 나서 일본바퀴벌레(외부 유입종) 성충이 발생하여 건물전체나 인근 방역 요청

조사결과

- 소독 및 살충 장비 현황(2022.12.기준)
 - 소독 장비

구 분	1톤 트럭	차량탑재형 분무기	휴대형 연막기	휴대형 초미립자분무기
대 수	2	2	6	10



1톤 트럭 · 차량탑재형 분무기



휴대형 연막기



휴대형 초미립자분무기

- 살충 기기

구 분	해충유인살충기	모기트랩	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
대 수	221	20	6



해충유인살충기



모기트랩(이동식)



모기트랩(고정식)



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

－ 모기발생감시 기기

구 분	유문등	디지털모기측정기(DMS)
대 수	2	2



유문등



DMS

○ 소독 추진 결과

－ 보건소 방역기동반 소독 실시: 2,153건

구 분	계	민원발생지	감염취약구역	하수도	소공원·하천변
소독 건수 (단위: 건)	2,153	366	697	183	907
면 적 (단위: km^2)	40	1.4	0.3	38.3	



감염취약구역 연막소독



하천변 분무소독

－ 동 특별방역기동반 소독 실시: 74,071건

구분 계(건)	수몰 지역	민원 발생	취약 가구	하수구	주거 지역	쓰레기 적치지역	통반장 건의지역	기타 (하천변 등)
74,071	9,176	996	4,617	32,383	8,984	14,665	129	3,121



하수구 소독



쓰레기적치지역 소독

조치의견 : 시정권고

- 구민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및 해충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소관부서에 ○○동 ○○○○(공동주택) 바퀴벌레 및 해충이 수시로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방역할 것을 요청하고, 인근 주택도 정기적으로 방역하여 해충이 자주 출몰하지 않도록 조치 권고함

조치결과

▶ 지역보건과

- 해당지역 방문하여 바퀴벌레가 다수 출몰하는 하수구 등에 연막소독 작업 실시
- 관내 방역활동 중 수시로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박멸정도를 점검할 예정이며, 살충효과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방역 및 약품교체 등 조치를 취할 예정



방역소독 실시

○○동소재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요청

민원개요

- 민원접수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원요지
 - 동대문구 ○○동 ○○○ 및 ○○동 ○○○ 소재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요청

조사내용

-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 옥외광고물 설치현황 (2022. 1월 현재, 단위/건)

종류	합계	벽면이용	돌출	옥상	지주	기타
합 계	8,499	5,114	2,900	23	115	347
허 가	3,637	566	2,701	23	35	312
신 고	4,862	4,548	199	-	80	35

※ 기타 : 공공시설이용, 교통수단이용, 현수막게시틀

○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현황 (2022. 1월 현재, 단위/건)

구분	총계	벽면	돌출	옥상	지주	창문	교통	기타	이행강제금 부과
수량	374	253	90	3	10	10	6	2	76건/108,475천원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현황 (2022. 1월 현재, 단위/건)

구분	총계	현수막	입간판· 풍선간판	벽보· 전단지	명함· 스티커	과태료부과
수량	592,302	7,542	974	491,911	91,875	24건/65,903천원

○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계획

1.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불법 간판 개선사업 실시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120개소 이내 간판(구간 미정)
- 사업구간 내 노후·불량간판 및 규격위반 간판 정비
- 간판 조명 개선(형광 → LED)에 따른 에너지 절약

2. 간판개선 사업구간 사후관리

- 간판개선 완료구간에 대한 사후관리로 도시경관 지속 유지
- 대 상

연도별	도로명	구간	업소수
2009년	왕 산 로	신 설 동 역 ~ 용 두 사 거 리	193
2010년	장 한 로	장 한 평 역 ~ 장 안 사 거 리	308
2012년	회 기 로	회 기 역 ~ 세 종 대 왕 기 념 관	238
	고산자로	용 두 역 ~ 제 기 역	90
2013년	파전골목	휘 경 동 3 2 9 번 지 일 대	19
	시립대앞	시 립 대 앞 ~ 롯데쇼핑 입 구	185
	외대앞	외 대 앞 ~ 외 대 앞 역	114
	고산자로	천 호 대 로 1 2 5 ~ 천 호 대 로 1 2 6	12
2014년	청량리로터리 일대	성 바 오 로 병 원 ~ 미 주 상 가 A 동 입 구	151
2015년	전농동로터리 일대	동 부 교 육 지 원 청 ~ 정 석 학 원	83
2016년	전농동로터리 일대	동대문중~전농동R ~ 답 십 리 R	173
	장한로 일대	장 한 로 1 4 0 ~ 장 한 로 1 8 6	40
2017년	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장 안 동 사 거 리 ~ 장 안 동 삼 거 리 ~ 장 안 지 하 차 도 ~ 배 봉 초 교 사 거 리	172
2018년	하정청렴거리 일대	신 설 동 교 차 로 ~ 동 진 교 ~ 비 우 당 교	157
2019년	전농동로터리 일대	전 농 동 로 터 리 ~ 배 봉 차 도 육 교	140
2020년	답십리사거리 일대	답 십 리 로 1 4 3 ~ 답 십 리 로 1 8 7 ~ 전 농 로 2 3 ~ 전 농 로 8 6 - 1	172
2021년	회기역교차로 및 외대앞 일대	이 문 로 3 4 - 1 ~ 이 문 로 1 0 7	145
2022년	배봉초교 교차로 및 촬영소사거리 일대	사 가 정 로 1 9 5 ~ 한 천 로 2 1 2 한 천 로 3 9 길 2 8 ~ 답 십 리 로 2 6 1 답 십 리 로 2 6 3 ~ 답 십 리 로 2 7 2	139

- 사업구간 내 사업 미참여업소 정비 및 신발생 불법광고물 단속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개선완료 업체 지속관리

3.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 주요간선도로변 불법 광고물의 노선별 순차적 정비
- 순 찰 : 정비반 편성, 1일 2회 실시
-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천호대로 외 20개 노선)
- 정비 전 사전안내 및 노선별 순차적 정비로 민원발생 최소화
- 5층 이상 돌출간판 및 대형 가로간판 등 위험광고물 우선 정비

4. 주인 없는 간판 및 노후간판 철거 용역

- 방치간판 및 노후간판 정비를 위한 철거용역 실시
- 영업장 이전·폐업 등으로 주인없이 방치된 방치된 간판, 노후간판 등
- 옥외광고협회 동대문지부와 정비 용역계약
- 태풍·장마 등 재난발생시 기동반 운영으로 시민안전 도모

5.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 태풍 등 각종 재난에 광고물로 인한 위험요인 예방
- 해빙기(3월), 풍수해(7월), 동절기(11월)
- 안전점검 전문기관(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점검
- 광고물과 건축물과의 고정상태, 광고물 게시상태
- 전기배선 및 안전기 등 전기설비 부착상태 등

○ 관련법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조치의견 : 시정권고

- 도시미관과 구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동대문구 동대문구 ○○동 ○○○ 및 ○○동 ○○○ 소재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요청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동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단속과 행정조치 요청

조치결과

▶ 건설관리과

- 동대문구 ○○동 ○○○ 및 ○○동 ○○○ 소재의 불법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
- 벽면이용간판의 위법사항을 해당업소에 안내하였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따라 자진정비 하도록 행정처분(시정명령) 할 예정이며, 미시정 시 같은 법률 제10조의 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

동대문구 가로수 정비사업 요청

민원개요

- 민원접수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원요지
 - 다수 식재되어있는 은행나무 열매가 인도에 떨어져 악취가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도로가 더러워져 미관상 좋지 않음
 - 동대문구도 구민 의견 반영, 도시미관 향상, 수종 다양화 등을 위해 이팝나무, 백합나무 및 벚나무 등으로 수종 변경 및 신규 식재 요청

조사내용

- 동대문구 가로수 현황



은행나무 가로수(사가정로)



양버즘나무 가로수(천호대로)



이팝나무 가로수(외대역동로)



느티나무 가로수(청계천로)



벚나무 가로수(답십리로69길)



감나무 가로수(약령중앙로)



칠엽수 가로수(무학로 25길)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검재로)

○ 가로수 식재 방향

- 기존 수종의 생육이 양호하면 유지 및 관리를 우선으로 함
- 가로수가 혼재된 구간은 우점수종으로 점진적인 수종 통일
- 주변의 자연, 인문 환경을 반영한 수종 식재
- 수종 바뀌심기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수종 교체

○ 관련법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22.12.30>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5.10.8>

1. 서울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5.10.8>

1. 교목
 -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의2(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리청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6, 2021.7.20>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3.18]

조치의견 : 이해설득

- 생육중인 양버즘나무 중 동공 발생 및 부패, 기울어짐, 수형불량 등 쓰러질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한해 은행나무로 변경하였고,
- 22년 가로수 바뀌심기 대상은 회기로, 약령시로, 신이문로로서, 이 가로변은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가 조성된 지역으로, 은행나무 열매 낙과 피해 저감을 위한 은행나무 암수 성별 교체식재가 계획된 것으로 확인함
- 해당 민원은 이팝나무, 벚나무 등 식재 요청이지만,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은 대부분의 노선에서 현행수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고, 가로수로서의 은행나무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은행나무를 식재한 것임
-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에 은행나무 식재 구간을 순찰하여 열매를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것을 협조 요청함

조치결과

▶ 공원녹지과

- 가로수를 심을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도심 내 열악한 환경에서의 생육, 대기오염 등 공해에 잘 견디는 내공해성, 병해충에 잘 견디는 내병성, 미세먼지 저감 등 공기정화 효과, 도심환경에서의 관리 용이성, 가을철 아름다운 경관 제공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 은행나무는 이에 알맞은 조건을 갖춘 수종으로서 가을철 은행열매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일부 단점도 있지만,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 3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대표 가로수 수종으로서 우리구에서도 가로수로서 많이 식재
- 최근 서울시 가로수의 조성방향이 동일노선은 동일수종 원칙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수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가로수 메워심기 또는 신규식재 시 추진단계부터 다양한 방향성을 검토

○○○○동 ○○○옥상 풋살경기장 소음 민원

민원개요

- 민원접수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원요지
 - 풋살장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므로 풋살장의 소음 해결해 줄 것을 요청

조치의견 : 중재조정

- 풋살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대상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에 해당되어 체육시설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풋살 경기 중 사람의 고성 등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음에 관한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음
- 해당부서에 운영 대표자에게 민원내용을 고지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 소음 등을 관리하는 현장 관리자를 교체·배치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 요청함

조치결과

▶ 체육진흥과

- 풋살장 운영 대표자에게 민원내용을 고지하고, 일부 차단막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설치 예정임



풋살장 차단막 조치사진

공사구간 도보권 확보 요청

민원개요

- 민원접수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원요지
 - 청량리 제○구역 공사구간은 등하교 시간에는 특히 차가 많이 다니고,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이동이 많음
 - 공사구간이 양방향통행으로 되어 있어 뒤섞인 차를 피해 사람이 다녀야하는 위험한 상황임
 -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

조사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청량리동 ○○○번지 일대(34,997.3m²)
 - 사업시행자 : 청량리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건축개요
 - 아파트 9개동(지하6층~지상18층), 총 791세대
 - 연면적 102,475.65m², 용적률 242.55%, 건폐율 25.28%
- 추진상황
 - '07.09.06.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07.12.26. : 조합설립인가
 - '09.04.02. : 사업시행인가
 - '20.04.23. : 관리처분계획 인가
 - '21.07.13. : 이주완료
 - '22.05.18. : 해체공사 완료
 - '22.10.06. :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 '22.12.29. : 착공신고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조치의견 : 중재조정

- 우리구는 개발로 인하여 공사구역이 늘어난 상황으로 공사구역의 어린이, 노약자 안전을 우선시해야함
- 특히 이 구간에는 등하교하는 다수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도로임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등하교시간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등하교시간 차량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요청함

조치결과

▶ 주거정비과

- 공사 착공 후 보·차도가 분리된 8m 도로를 설치하여 보행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공사 시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예정



조치계획

○○동 물류터미널 반대

민원개요

- 민원접수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원요지
 - 물류터미널 신축으로 일일 수많은 차량이 드나들어 4차선 도로가 교통체증으로 교통대란이 예상됨. 그로 인해 등하교길 인근 9개 초중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건강까지 해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
 - 동부간선도로에서 해당부지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늘어서서 신호 3번 이상에 빠져나가는 걸 확인함
 - 터미널 건설로 화물차량이 하루 몇 천대 추가된다면 교통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함

조사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 ▲. ~ 계속
 - 위 치 : ○○○ ○○○-○ 일대
 - 면 적 : 22,291.3㎡
 - 도시계획 : 유통상업지역,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 부지현황 : 나대지



- 그간 처리 경과
 - ‘20.07.15.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개발계획(안) 신청(개발사→市)
 - ‘21.04.09.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市)
 - ‘21.07. : 사전협상 사업제안서 제출 및 관련부서 협의(개발사→市)
 - ‘22.09.16. : 제1차 주민설명회 개최(區)
 - ‘22.10.20.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市, 22.10.21.~11.3.)
 - ‘22.10.31. : 제2차 주민설명회 개최(區)

조치의견 : 이해설득

- 터미널 건설로 부득이하게 차량 통행이 증가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주민과의 소통 및 이해설득이 필요
- 대책마련이 없이 사업진행시 지역사회 갈등·주민 반발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차량 통행에 대한 반대가 있는 상황으로 물류차량의 우회 및 새로운 진입도로의 신설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조치결과

▶ 도시계획과

- 민간사업자로부터 '21년 7월 서울시에 제안되어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등이 '21년 12월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
- 사업대상지 주변에 1개 차선 추가 확장, 미집행도로 개설, 이면도로의 거주자주차면 삭제 및 도로 확폭 등을 통해 차량 통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물류차량은 ○○○로(○○교 방향)로 진입, 지하로 이동 후 다시 ○○○로로 진출토록 계획하여 보행자와 물류차량 간섭을 최소화하였고 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 개설 및 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V

홍보현황

평범한 우리 동네문구

온라인홍보

○ 동대문구 홈페이지 홍보

홈페이지



○ 동대문구 SNS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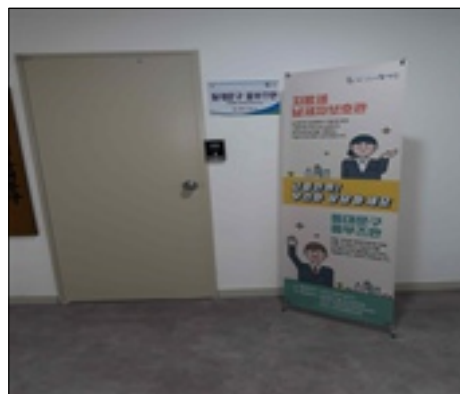
스마트레터



오프라인홍보

- 홍보물 제작 :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지방세납세자 보호관과 함께 내용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홍보 진행

▶ 배너설치



▶ 포스터



▶ 리플릿

